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91 호 2023. 3. 16.(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1290회[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예 규

- 울산광역시 북구 예규 25회[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5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50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51회[하천점용 변경허가(협의) 고시].....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53회[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379회[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402회[지적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417회[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8, 소로2-9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6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3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주택법」 제52조”를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0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6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존 상위법령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변경된 법 규정을 반영하고,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정대상 확대 및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 법규명 변경(제1조)
 -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 적용 범위(조정대상) 확대(제2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
-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요령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 층간소음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해 신청서에 층간소음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기재요령' 명기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3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 예규 제25호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처리 담당자의 직무수행 중 폭행예방 등 민원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의복 등에 부착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녹화한 영상 및 음성기록을

말한다.

3. “영상기록저장장치”란 영상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등) ① 민원처리 담당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민원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 사양)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기능이 있어야 한다.
2. 해상도는 Full HD급(1920×1080)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체나 의복 등에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4. 휴대용 보호장비의 영상기록을 별도의 시스템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5조(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기준) 민원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헐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경우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된 영상기록은 지체 없이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저장장치에 전송·저장하여야 한다.
 3. 저장된 영상기록 정보는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
 4. 저장된 영상기록 정보를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저장장치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 녹화일, 녹화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관리하고 휴대용 보호장비에 저장된 영상기록은 삭제하여야 한다.
 5. 휴대용 보호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2.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체진단 및 장애 유무

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이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 부서장
2.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 주무 담당

②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입·출고를 관리한다.

제3장 기기관리 및 보안 등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피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저장장치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휴대용 보호장비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장 기록물 관리 및 교육

제12조(영상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를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의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개정 2022. 7.11. 시행 2023. 4. 1.)의 개정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위법행위의 예방 및 입증자료 확보 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의 적절한 사용 및 준수사항 등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휴대용 보호장비 지침 제정 목적 및 관련용어 정의(제1조, 제2조)
- 나. 휴대용 보호장비 사양, 사용자 준수사항 및 관리책임자 지정(제4조 ~ 제7조)
- 다.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및 보안 등(제8조 ~ 제11조)
- 라. 영상기록 증거물 작성, 사용자 교육 등(제12조, 제13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5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3. 13.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산림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양정동 779번지 일원 외 4개소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2,086㎡
 - 나. 기 간
 - 영구 : 2023. 3. 13. ~ 2099. 12.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공원녹지과)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51호

하천점용 **변경**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561-1, 571-3, 557-1번지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561-1, 571-3, 557-1번지	하천의 명칭	○ 명춘천
점용 내용	○ 토지의 점용(관로 매설)	점용 면적	○ 일시 127.3m ² ○ 영구 15.0m ²
점용 기간	○ 당초 : 일시 '22. 10. 15. ~ '23. 3. 31. 영구 '23. 4. 1. ~ '27. 12. 31. ○ 변경 : 일시 '22. 10. 15. ~ '23. 5. 25. 영구 '23. 5. 26. ~ '27.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3. 16.
2. 점용·사용의 목적 : 도시가스 배관 매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700-1, 935-173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일시) 45.0㎡, (계속) 2.0㎡
 - 나. 기 간 : 2023. 3. 16. ~ 2027. 12.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법인명) :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번지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23- 379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번지
소하천명		제2울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1068번지, 양정동 845번지
	면적	일시 : 34.0㎡, 계속 : 8.0㎡
	기간	일시 : 2023. 3. 10. ~ 2023. 5. 9. 계속 : 2023. 5. 10. ~ 2099. 12. 31.
	목적 및 사유	수소배관 매설

열람서류

1. 설계도서
2. 위치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402호

지적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에서는 지적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인원	근무예정부 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지적 업무보조	1명	민원지적과	○ 부동산 소유권 정리 ○ 연속지적도 정리 ○ 지적 업무보조	2023. 4. 1. ~ 11. 30.

※ 단,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자격기준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지적 업무보조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복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우대조건

- 울산광역시 복구 6개월 이상 거주자
- 지적관련업무 근무 경력자
- 지적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한부모가정 세대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대상자 등

3.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2023. 4. 1. ~ 2023. 11. 30.

나.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다. 보 수

1) 임금 : 76,960원/일

2) 수당 : 가족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급식비, 교통비

4. 채용일정

가. 공고기간 : 2023. 3. 13. ~ 3. 22.

나. 서류 접수

1) 기 간 : 2023. 3. 13. ~ 3. 22. 09:00 ~ 18:00

2) 장 소 : 북구청 민원지적과(1층)

3)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접수(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다. 면 접

1) 일 시 : 2023. 3. 28. 14:00(예정)

2) 장 소 : 북구청 민원지적과

라. 합격자 발표 : 2023. 3. 29. 개별 유선 통보(합격자에 한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5. 제출서류

가. [표준이력서 1부](#) 【붙임 1】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붙임 3】

라.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한부모가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함

나. 최종합격자 계약 포기, 임용결격사유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선발

7. 채용서류 반환청구

- 가. 시행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나. 청구대상: 불합격자 중 희망자
- 다. 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 라.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본인 방문) 【붙임 4】
- 마. 반환방법: 서류 제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 ※ 청구기간 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채용서류 일체 폐기

8.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최종합격 후 합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라.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3)

【붙임 1】

표준 이력서(안)

<필수항목>

지원자 성명	한글		
	영문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관련 자격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별도 작성 가능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장애 정도	장애인 등록번호
저소득층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여부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을 마련하고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 작성 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3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4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8, 소로2-9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신천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8, 소로2-9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8, 소로2-90호선)사업

나. 명 칭 :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소로2-88, 소로2-90호선) 도로개설공사

2. 위 치(변경 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4-1번지 일원

3. 사업개요(변경)

구분	도로규모				개설연장(m)	총면적(m ²)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도로(당초)	소로	2	88, 90	8.0~10.0m	97m	816
도로(변경)	소로	2	88, 90	8.0~10.0m	97m	85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기간(변경 없음) : 2020. 6. 25. ~ 2024.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 없음)

7. 열람기간 :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7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필지조서(신천동 제내마을 일원 소2-88, 소2-90호선 도로개설공사)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당초)		지적(변경)		소유자		비고
	시, 군	면	리	지번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주소	성명	
1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6-3	전	535	5	-	-			구획정리되어 폐쇄
2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4-10	답	245	18	-	-			구획정리되어 폐쇄
3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6-5	전	89	18	-	-			구획정리되어 폐쇄
4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8	구	541	25	541	15		국(농림축산식품부)	
5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6-2	전	1,194	6	1,194	8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000-0	차00 외 1인	
6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4-1	답	1,050	744	231	231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6,000동 0000호	김00 외 1인	
7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827-4	도	-	-	6,724	70		울산광역시 북구	
8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4-15		-	-	528	528		울산광역시 북구	
9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4-14	도	-	-	457	5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 241,000동 000호	김00 외 1인	
합계						3,654	816	9,675	857			